
다인종 · 다문화 시대와 경찰활동 변화의 모색

Searching for Change of Policing in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Age

이효민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Hyo-Min Lee(police98@wonkwang.ac.kr)

요약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물질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와 자본의 흐름, 정보의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어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국적취득을 비롯하여, 불법체류, 밀입국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경찰활동은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실무에 필요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경찰활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중심어 : | 외사경찰활동 | 외국인범죄 | 국제결혼 | 범죄피해 |

Abstract

Meeting 21th century's globalization · info-age, as well as material interchange between the country, comings and going of people and the stream of capital,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re consisting vigorously. The interchange of Human and material, which pass over frontier, becomes important stepping-stone that can make run rich life to us. The interior of a country in staying foreigners are increasing. But, Actually Policing is short of police-educations and police-training. In accordance with in studies are check up point that policing for a change in foreigners for the sake.

■ keyword : | Foreign Affairs in Policing | Foreigner's Crime | Intermarriage | Criminal Victimization |

I.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이미 다문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한 중국인 동포의 유입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향상으로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의 증가, 저출산 ·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인해

다인종 · 다문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747,467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1.55%를 차지하였으며, 1985년의 체류외국인이 40,920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0.09%를 차지한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수치의 증가이며,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1].

더욱이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2001년의 15,234명에서 2005년 현재 43,12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

다. 이는 국내전체 결혼의 약13%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이며, 또한 국내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도 2005년 한 해 동안 4,208건으로 매우 수치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무수행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찰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55%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반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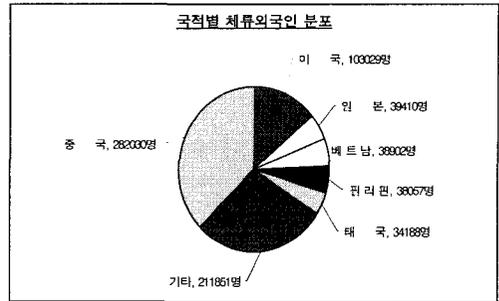


그림 1.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주요 국가별 체류외국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국내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경찰활동

1.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우리나라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의 확산으로 인해 외국적동포, 외국인력, 결혼이민자 등이 급증하는 등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고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표 2. 주요 국가별 체류 외국인 변화추이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국	201,184	223,410	237,497	281,934	282,030
미국	94,131	101,786	106,390	105,315	103,029
일본	33,167	36,648	42,504	42,949	39,410
베트남	19,717	20,799	24,908	28,655	38,902
필리핀	28,817	29,700	32,451	34,828	38,057

국가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의 순서이며, 중국은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취업관리제 및 결혼이민자 수, 미국은 외국적 동포의 방문동거와 주한 미군의 수, 일본은 관광 통과 및 국민의 배우자 수, 베트남과 필리핀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자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4,407명에서, 20,683명으로 70%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재정적인 이바지뿐 아니라 대외이미지 개선,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이 뜨겁다. 이를 위해 국내 각 대학들은 각종 장학금과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체류 외국인	40,920 명	49,507 명	269,641 명	491,324 명	747,467 명
총 국민	43,390 천명	44,553 천명	44,553 천명	45,985 천명	48,294 천명
인구 대비	0.09 %	0.11 %	0.60 %	1.07 %	1.55 %

1995년 269,614명이던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5년도 747,46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77%증가하였다[2]. 특히 2005년의 국내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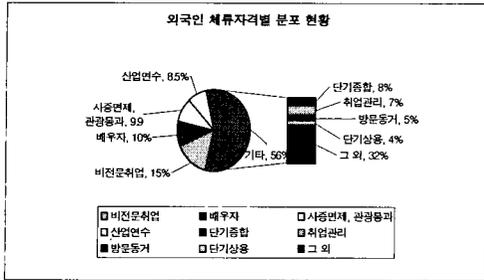


그림 2. 외국인 체류자격별 분포 현황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증가추세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자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제결혼건수	15,913	25,658	35,447	43,121
국적취득건수	1,734	5,339	5,768	8,419
국적취득비율(%)	11.4	21.1	16.2	19.5

(단위: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 국	1,636	4,249	4,331	6,865
필 리 핀	23	918	984	721
베 트 남	15	79	124	344
몽 골	4	38	34	75
파키스탄	6	63	53	56
태 국	1	34	44	60
우즈벡	0	18	30	67
기 타	49	152	168	231
총 계	1,734	5,339	5,768	8,419

1980년대의 국제결혼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주로 일본여성이 입국하였으며, 90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한데 이어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국적도 다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도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 중에서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매년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外事경찰의 주요활동과 현황

외사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외국인, 해외교포, 외국관련기관, 단체 등의 외사대상에 대하여 이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외사경찰활동의 중요성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범죄의 탈국경화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출·입국자의 증가,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 해외여행자의 증가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산업정보의 유출, 마약밀수의 증가, 여권의 위·변조사범의 증가, Super Note의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국제신용카드사기, 외국인범죄의 증가, 국제범죄조직의 침투, 내국인의 국외범 및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외사경찰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사경찰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外事경찰의 주요활동

외사 정보활동	외사활동의 객체를 대상으로 외사정보를 수집·판단·분석·제공하는 작용 외사정보 활동은 간접적 접촉을 통한 비노출비공개적 활동을 수행해야 함
외사 수사활동	외사객체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탐지하고 범인의 검거·조사, 증거수집·보전하는 활동
외사 보안활동	외사활동의 객체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나 산업스파이 등 기타 반국가적행위의 여부를 파악하고 동향을 관찰하는 외사경찰의 활동 간첩의 혐의 있는 자에 대한 검거공작은 물론 국제테러단체와 그 조직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이 포함됨
국제 협력활동	외국경찰이나 인터폴 등 국제경찰관련기구와의 협력관계 증진 및 정보교환 활동으로 외국 및 국제경찰 관련기구와의 경찰공조·상호방문·교육파견·자매결연·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이루어 짐

외사경찰의 정원 및 현원 현황 및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외사경찰 정원 및 현원 현황 및 증가추이
(단위: 명, 정원/현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말
계 (명)	877 /882	888 /895	950 /991	948 /1,022	1,018 /1,088	1,020 /1,089
경찰청	72 /73	72 /74	72 /73	66 /76	91 /76	94 /86
지방 경찰청	805 /809	816 /821	878 /918	882 /946	927 /1,012	926 /1,003

외사경찰의 정원은 2001년 877명에서 2006년 7월말 현재 1,020명으로 약 16.3%증가되었으며, 현원은 2001년 882명에서 2006년 7월말 현재 1,089명으로 약 23.5% 증가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외사경찰 정원은 1,020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1.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며, 지방청, 경찰서 하부조직이 미약해 집행·현장접점 기능이 약화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14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4개의 지방경찰청(서울·부산·인천·경기)에만 외사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234개 경찰서 중 74개 경찰서만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고, 160개 경찰서에는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3]. 최근 5년간 체류외국인이 25.6%, 검거된 외사사범이 204% 증가하는 등 외사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죄종별 외국인 범죄사건 검거 현황
(단위: 명)

죄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현재
살인	32	60	42	59
강도	137	157	124	64
강간	49	52	62	27
절도	630	825	821	512
폭력	2,071	2,424	1,919	1,320
지능범	834	1,965	3,340	4,520
성폭력	49	40	32	27
미약류	120	218	152	36
기타	2,222	3,362	2,550	1,566
계	6,144	9,103	9,042	8,131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 및 거주하게 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외국인 범죄사건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폭력범죄가 월등하게 많으며, 최근 지능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외사경찰 인력현황에 비추어 본다면 늘어나는 범죄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III.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경찰활동의 문제점

1. 외사경찰교육훈련의 부족

경찰교육기관(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수사연수소)내 외사직무 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현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외사경찰 특별채용을 통한 신입교육을 제외하면 경찰수사연수소와 경찰종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2개 과정이 전부인 것이다.

2007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을 살펴보면, 외사직무 관련 전문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 기관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교육 일정
경찰 수사연수소	국제범죄 수사과정	1주	40	년 4회
경찰 종합학교	외사정보 실무과정	1주	40	년 2회
중앙 경찰학교	외사 특채자 신입교육	24주	20	년 1회

국제범죄수사과정의 경우 35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수사, 국제위장결혼 수사, 밀입국 사범 수사, 여권법 위반사범 수사, 외국 위조신용카드 수사, 국제공조 수사(국외도피사범), 국제조직범죄의 이해, SOFA사범수사, 위조달러 등 감별, 산업기술 유출범죄 수사의 직무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사정보실무과정의 경우 외사경찰 일반론, 국제정세의 이해, 테러정세 변화와 외사경찰, 외사정보 대상 및 접촉요령, 국제예절(의전, 에티켓), 이슬람 문화의 이해, 외사정보 보고서 작성요령, 인터넷 외사정보 검색, 작무사례 발표 및 토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사경찰의 업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 국가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수사를 위한 의사소통(언어)을 위한 교육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사경찰이라는 직무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력 부족

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참고인은 대부분 우리나라말을 할 수 없고 경찰관도 해당 외국어를 할 수 없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언제나 통역인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 범죄 또는 피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서 가장 큰 애로점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습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하더라도 진술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에 경찰청에서 밝힌 외국어전문요원 현황으로 79명의 명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사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비 외사업무 근무직원이 20명으로 외국어 전문요원이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의 통역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경찰관 787명 전의경 291명 민간인 2,035명으로 총3,113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력활용은 외국인의 민원처리, 테러예방활동, 국제성범죄수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통역요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11월 통역 자원봉사단체인 “한국BBB운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니어·베트남어 등 17개 어권의 24시간 통역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통역은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이며, 영,일,중국어는 시간당 30,000원, 기타언어는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통역자들이 기피하는 현실이다.

또한 외사요원 특별채용 시험에서 모집하는 경찰관도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니어로 8개 언어로 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필리핀, 태국, 몽골, 파키스탄 등의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이 단절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순찰지구대 요원의 기초적 회화능력 부재

우리나라 경찰인력 현황은 2007년 2월 현재 146,869명이고 전의경을 제외한 경찰관이 95,613명이며, 생활안전경찰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41,751명이며, 지구대 826개소, 파출소 529개소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 관내에는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90% 이상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부부싸움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44%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결혼 2년안에 파혼할 경우 국적취득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폭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여성에 대한 폭행사건 등 생활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가장 가까운 파출소 경찰관이 담당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외국인 여성과 의사소통을 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관들에게 영어는 그다지 생소하지는 않겠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벡 등 출신의 여성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구제받기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재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이 가장 많은 인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시 영어의 활용도 매우 낮으며, 기타 외국어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회화정도의 수준의 교육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4. 체류 외국인 신원확인 어려움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의 범죄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신원확인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 중 91일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의무가 있고 1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문등록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조회로 입·출국사항을 확인하거나 체류지의 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에 있는 외국인등록사항을 확인하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확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4].

5. 외사과와 형사과의 업무한계

경찰청의 외사과와 형사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외사과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형사과와 중복되는 점이 많은데 특히나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의 경우는 외국인이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 외사과나 형사과 모두 취급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적은 인원과 수사역량의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이 형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사과수사요원은 상표법 위반이나 원산지 미표시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수사만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은 전체 범죄중에서 외사사범이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외사과가 일반 형사과와 대등한 조직 및 인원을 보유하고 모든 외사사범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5].

IV.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경찰활동에 관한 정책적 제언

1. 외사경찰 모집의 현실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사경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전체 경찰인력의 약 1.1%의 인원으로 외국인과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하고 해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군다나 외사경찰 특별채용으로 임용을 하고서도 비외사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외사경찰은 년1회 20명을 경장계급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니어의 8개 언어로 한정하고 있는바 다인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능숙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경찰관을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 밝힌 통역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히브리어, 파키스탄어, 힌두어, 부루나이

어, 이란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터키어, 미안마어, 타갈로그어(필리핀)와 같은 언어는 경찰관중 통역이 가능한 인력이 전혀 없으며, 최근 입국이 많아지고 있는 베트남, 몽골,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이 극히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외사 분야로 경찰에 입직하여 비외사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체적으로 고학력 추세의 경찰관 모집에 비추어, 영어 실력 우수자를 외사분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다시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찰에 대거 지원하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영어의 기본적인 실력은 갖춘 상태에서 입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경찰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영어 구사능력 우수자를 선발한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통역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구사능력을 갖춘 외사요원을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합리적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경찰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의 개설은 없다. 조직외부에 의뢰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전체 18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외국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과정은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한 외국어과정(주,야간)이 유일하며, 10-20주의 교육기간으로 년 2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경찰은 외사경찰이겠지만,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골지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외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국어 교육훈련이 절실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경찰종합학교의 교육과정 중 지역경찰실무과정은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과정이지만 일반외국인사범초동조치 요령에 대해 3시간을 교육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따라서 외사경찰 뿐만 아니라 순찰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에게 능숙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기

초적인 회화가 가능한 정도의 교육은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외사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반드시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자에게 기초회화의 수준의 교육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은 베트남, 몽골, 우즈벡,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대부분이므로,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기초적인 회화실력은 갖추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결혼이민을 통해 체류중인 외국인과의 대화를 위한매뉴얼 개발

농림부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5년말 기준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살고있는 외국인 여성이 14,000여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이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약 농어촌 총각3명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여성들이 농어촌 지역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결혼이 낳는 부작용으로서 많은 폭력피해사례 외국인 여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동포나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경시 풍조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고통을 공공연히 주변 주민들에게 접할 수 있지만, 당사자와의 언어소통의 장애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이 많으며, 범죄사건의 발생시 목격자 또는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시에 외사경찰에 업무를 떠넘기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의 언어를 경찰관이 구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매뉴얼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폭행피해 사실이 있습니까?”,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죄사건을 목격하십니까?” 등의 질문과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각국의 언어로 구성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외국인지원 민간단체와 경찰의 연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많은 민간단체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사건의 발생시에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입을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우리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경찰의 활동도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이라는 편협하고 왜곡된 시야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적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민간단체들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체류외국인들은 경찰보다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간단체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들은 경찰에게 범죄피해사실 등을 알리기가 어렵다. 현재 범죄피해로 신고되어지는 경우도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체류 외국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경찰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들과 경찰이 정기적인 교류를 하게 된다면, 범죄피해가 더욱 가중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현실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이 기피하는 직종의 업무에서는 인력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의 남성들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외국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인종문화시대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찰활동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5%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외국인의 비율이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치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경찰로는 의사분야와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활동의 변화는 의사분야와 파출소 근무경찰관의 능력배양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며, 다인종다문화시대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 자 소 개

이 효 민(Hyo-Min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사)
- 2004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과정수료)

• 2007년 3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주대학교 법정부 강사

<관심분야> : 경찰인사관리, 경찰조직관리

참 고 문 헌

- [1]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6.
- [2] 경찰청, 외국인 범죄 관련 의사인력배치 현황 및 향후 보강 계획, 국회제출자료, 2006(10.12).
- [3] 경찰청, 경찰외사론, 2004.
- [4] 최성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1, 2005.
- [5] 최성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5, 2005.